

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4. 4. 1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4년 4월 17일 14:00 ~ 14:52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김 소 영 부위원장

김 용 재 위 원

이 형 주 위 원

유 재 훈 위 원

유 상 대 위 원

김 용 진 위 원

이 세 훈 대리참석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4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4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2024년도 제6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4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의결안건 제100호 『○○○○○○(주)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권유를 함으로써 공모규제를 회피한 발행인을 제재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01호 『로버스트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로버스트자산운용(주)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상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건의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1호 안건과 관련하여 로버스트 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집합투자규약 위반으로 코스닥 벤처 펀드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수익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건의 과태료 금액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2호 『(주)지큐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지큐자산운용에 대해 자본법상 과태료를 부과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3호 『한일퍼스트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일퍼스트자산운용(주)에 대해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금산법상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건 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4호 『코너스톤자산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코너스톤자산운용(주)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건 의하는 내용

○ (위원) 이번 건에서는 SPC를 설립해서 일종의 투자도관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SPC가 되는 것임. 그리고 그 SPC를 통해서 제3자에게 대출이 나가는 형태가 됨. 증선위에서는 신용공여가 1차에서부터 2차·3차·4차까지 있었음. 그것이 투자도관적 성격도 있지만 SPC가 대주주에 대한 지원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과징금을 50% 감액하는 형태로 결의가 됐음. 그런데 이번에 안전검토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해보니까 1차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투자도관적 성격과 대주주에 대한 일부 신용공여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했음.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50% 감액하는 증선위 의견을 따랐음. 그런데 2차·3차·4차 신용공여가 따로 있었는데 그 신용공여를 보니까 대출이자에 대해서 선이자 지급하는 것이 있었고 이자소득 원천징수 납부라는 것이 있었음. 그것을 보면 SPC에 대해서 단순히 투자도관이 아니고 그 액수 전체가 실질적으로도 SPC의 운용자금 용도로 사용된 것이고 그것은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음. 그래서 2차·3차·4차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액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임. 그래서 증선위 결정에 비해서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의 과징금 액수가 상향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선위에서도 액수가 상향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음. 그리고 이 안전을 검토하다보니까 SPC를 설립해서 한 신용공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앞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자산운용과에 SPC를 통한 자금지원에 대해서 사례별로(case by case)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음.

- (위원) 안전 자체라기보다는 안전 제101호부터 제104호까지는 자산운용사 전수조사하면서 나온 것들인지? 앞으로도 또 들어올 것 있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앞으로도 있음.
- (위원) 사실은 준법감시나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사항이라든지 집합투자규약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소규모 자산운용사들이 하고 있는 것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잡아서

제재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규제 자체가 서비스라고 보면 미리미리 이런 것은 규제당국에서 알려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금융위원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본 케이스들임. 그런데 금감원 직원들은 가서 이것부터 볼 것 아님.

- (보고자) 협회와 같이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모임이 있음. 갈 때마다 기존에 금융위 최종 조치된 사안들 위주로 위반되는 항목들, 주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음. 지난번에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 번 상기시킨 바도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 (보고자) 그것을 말씀 올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금 말씀이 증선위에서도 사실 많이 나왔음.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 국장이 말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설명도 하고 있음. 거기에 덧붙여서 제재를 할 때도 창업초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그 3가지를 묶어서 패키지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충분히 고지하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재의 전례도 있는 것임. 지금 하는 방식대로 제재를 감면해서 부과를 하되 계속 공지를 해서 알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음.
- (위원) 금감원 국장님, 특별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는 것이 어떠한지. 매번 똑같은 것을 계속하기 그래서 그런 것인데, 사전에 설립이 되면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주고 같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 (보고자) 인허가제 심사가 들어올 때 사전에 이런 위법사항들에 대해서 자산운용사들 설립 이후에 이런 위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준법서약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음.
- (위원) 각서 같은 것을 받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이것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의(attention)가 있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문제가 올라옴.
-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함. 금감원 안에서 제재 여러 건 운용하면서 굉장히 반복되고 빈번히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함. 어떤 것은 제도 자체가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것은 금융회사가 잘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알고도 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위반하는 것이 낫다는 유인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임.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안내가 필요한 것은 좀 더 안내를 해 주고 자율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시정기회를 주고, 또 어떤 경우는 제재를 좀 더 엄격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그동안 운영해 오던 관행을 바꾸려다보니까 약간 적응기간도 필요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4호 안건과 관련하여 코너스톤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전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회사의 자기자본 변경, 개별 신용공여의 특성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7억 8,800만 원에서 5억 8,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5호 『OOOO(주)(舊 O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6호 『(주)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7호 『계양전기(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8호 『한화손해보험(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화손해보험(주)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9호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임의 개설 사고와 관련, 대구은행 및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업무의 일부(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 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0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작년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1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납부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과오납하는 경우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의 공유·활용을 확대하는 등 신용정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3호 『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주)의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3.11월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예비허가를 받은 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주)의 본허가를 심사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4년도 금융위원회 제7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52분 폐회)